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706
----------	-----

제출년월일 : 2009. 9.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령 및 개정 조문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상위법의 개정법명 반영

- 참전군인지원에 관한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제증명등 → 제증명 등
- 인 → 명, 의하여 → 따라

3. 근거법규 : 기획감사실-2019(2009. 2. 13)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계획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9. 6. 29 ~ 7. 20)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증명등”을 각각 “제증명 등”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각 “1인마다”를 “1명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참전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를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 <u>제증명등</u> 수수료 징수 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 <u>제증명 등</u> 수수료 징수 조례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 가, <u>기타</u>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이하 <u>제증명등</u>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39조에 따라 ----- -----, <u>그 밖의</u>----- ----- -----(<u>제증명 등</u> -----) ----- -----.</p>
<p>제2조(적용) <u>제증명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u>제증명 등</u> ----- ----- ----- <u>따라</u> ----- -----.</p>
<p>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 할 <u>제증명등</u>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p>	<p>제3조(징수구분) ① ----- <u>제증명 등</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u>제증명등</u>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u>제증명등</u>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u>1인마다</u>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4조(기준) ①----- <u>제증명 등</u>----- ----- <u>제증명 등</u>----- ----- <u>1명마다</u> ----- -----.</p>

현 행	개 정 안
<p>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p>	<p>----- -----제증명 등----- -----.</p>
<p>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② ----- ----- 1명마다----- -----.</p>
<p>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p>	<p>③ ----- 제증명 등----- ----- ----- ----- ----- ----- 제증명 등----- ----- -----.</p>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증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제5조(징수방법) ①----- ----- 제증명 등----- ----- ----- -----, 제증명 등----- -----제증명 등----- ----- -----.</p>
<p>② 「울산광역시증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계기 및 전자계기에 의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p>	<p>② ----- 제5조 제1항에 따라 ----- ----- 제증명 등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제증명등</u>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관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u>제증명등</u>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u>제증명등</u> 3. 「<u>문화재보호법시행령</u>」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u>제증명등</u>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u>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u>참전군인등</u>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u>제증명등</u>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 -----<u>제증명 등</u>----- ----- ----- -----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u>제증명 등</u> 2. ----- ----- ----- <u>제증명 등</u> 3. 「<u>문화재보호법 시행령</u>」 제56조 ----- ----- ----- <u>제증명 등</u> ----- 4. ----- ----- -----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u>참전유공자</u> ----- ----- 5.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 <u>제증명 등</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0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2(수)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9. 7(월)

라. 위원회 상정 : 2009. 9. 17(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개정된 상위법령 및 개정 조문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상위법의 개정법명 반영

○ 참전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제증명등 → 제증명 등

○ 인 → 명, 의하여 → 따라

5. 관련법규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 검토의견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